● 제332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001) 검 토 보 고 서

2025. 9.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이병도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3001

I. 개정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가. 제 안 자 : 이병도 의원 외 21명

나. 제 안 일 : 2025. 8. 11.

다. 회 부 일 : 2025. 8. 1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2023년 7월 18일 전부개정되어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입양가정 지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제명을 입양 관련 지원 전반을 포괄할수 있도록 변경하고,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 한 조례'로 변경함.
-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편견 및 차별 해소,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의무를 시장의 책무에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지원사업에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편견 및 차별 해소 정책 수립·시행을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4조제6호 신설)
- 양육보조금과 입양축하금 등의 지급 및 환수조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 (2025.4.5.~4.9.) 결과 : 의견없음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1 개정안의 개요

- 해외 입양 과정 중 인권침해 사건 등1) 기존의 입양 절차는 민간 입양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져 국가의 책임과 관리·감독이 미흡하 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입양 전 과정에 걸쳐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입양특례법」을 전면개 정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 2023년 7월 18일 자로 공포되어 2025년 7월 19일자로 시행되었음.
- 개정된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동복지법」제15조제 1항제6호²)에 근거해 입양이 필요한 아동으로 보호조치 결정을 하면 입양 전까지 '입양기관'이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을 보호하고, 입양 후에도 '입양기관'이 아닌 '국가(복지부)'가 아 동 적응상황을 점검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관 리·감독 하에 공적 입양체계가 마련되었음.

^{1) 2025.3.2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보도자료), '국가의 총체적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해외입양 아동 인권침해 진실규명'

^{2) 「}아동복지법」제15조(보호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u>

^{1.~5. (}생략)

^{6.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공적 입양체계 개편 방향3)>

■ 기존 보호대상아동 입양 절차

- <u>지자체가</u> 입양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u>입양기관</u>이 보호하면서 적합한 예비 양부모를 결연해주고 법원허가 거쳐 입양 완료 → <u>입양기관</u>이 입양가 정 사후관리
- '25.7월 시행 예정 입양 절차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지자체 책임 하에 수행)
 - <u>지자체가</u> 입양 대상 아동 결정* 후 **입양 전까지 보호** → <u>복지부가</u> 예비양부모 조사, <u>복지부가</u> 입양정책위원회에서 결연 → 법원이 임시양육결정 및 입양허가 → 복지부가 아동 적응상황 점검
 - 개정안은 기존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개정 전 상위법령 「입양특례법」을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을 수정하고, 조례의 지원대상을 입양가정에서 입양아동 및 입양가 정으로 확대하기 위해 발의되었음.

2 주요사항 검토

□ 조례 제명 변경

- 개정안에서는 기존 조례의 제명(「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입양아동'을 추가하여 '서울특별시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을 수정함.
- ㅇ 개정된 법에서는 공적 입양체계를 마련하면서 입양기관이 아닌

^{3) 2025.3.13.} 보건복지부(보도자료), '올해 7월 공적 입양체계 개편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17개 시도 협업'

지방자치단체의 '입양아동'에 관한 지원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음.

<개정된 법에서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 조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6조(국가 등의 책무)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을해소하는 등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해소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제31조(사후서비스 제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가정이 입양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 1. **입양아동의 건전한 성장** 및 입양가족 간의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 등을 위한 모임이나 단체의 사업 지원
- 2. 입양가정에서 **입양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양육에 필요한 정보** 의 제공
- 3.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개설 및 상담요원의 배치
- 상위법 개정에 맞추어 시장의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조례의 제명을 수정하 는 것은 타당해 보임.
- 조례안 본문에서도 입양아동에 대한 사회적 차별 해소 정책 수립
 (안 제4조제6호),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 지급(안 제5조) 등
 입양아동에 대한 시장의 구체적인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정의 규정 수정 (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개정된 법에 맞추어 정의규정을 수정하고 있음. 상위법령과 동일한 용어에 대해 정의규정을 통일하는 것은 타당 하다고 보여짐.

<신·구조문 대비표>

\ し	41-177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	제2조(정의)
어의 뜻은 <u>다음 각 호와</u> 같다.	<u>다음과</u>
1. "아동"이란 <u>18세 미만인 사람</u> 을	1
말한다.	<u>조제1호에 따른 아동</u>
2. "입양아동"이란 <u>「입양특례법」</u>	2. "입양아동"이란 <u>「국내입양에 관</u>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	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된 아동을 말한다.	<u>말한다.</u>
3. "장애아동"이란「입양특례법 시	<u><삭 제></u>
행령」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	
<u>다.</u>	
4.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	<u>3. "보호대상아동"이란</u>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을 말한다.	
5. "입양가정"이란 <u>요보호아동</u> 을 입	4
양한 가정을 말한다.	<u>보호대상아동</u>
6.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	<u> <삭 제></u>
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상위법과 동일한 용어에 대해 조례에 재기재할 경우 추후
 상위법이 개정되면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므로 입법경제상 삭

제하는 방향도 고려해 볼 수 있음.

<상위법과 동일한 개정안 '정의 규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개정안 제2조(정의)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이 법에 따라 입 양된 아동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	3.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		
동을 말한다.	동을 말한다.		

□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안 제3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입양 과정에 대한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시장이 입양 업무를 수행함에 있 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책무 규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	
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	
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u>가정을</u>	<u>영구적인</u>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	<u> 가정을</u>
원을 하여야 한다. <u><후단 신설></u>	<u>이 경우 영구적</u>
	<u>인 가정을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u>
	그와 유사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
<u>다.</u>
③ 시장은 입양과 관련한 기관 또는
개인이 입양으로 인하여 부당한 재
정적 이익 등을 취득하지 아니하도
록 하는 등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입양 과정에서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문제는 상위법 개정의 주요 배경 중 하나였음. 개정된 법에서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입양과 관련해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위반시 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음.

<개정된 법에서 입양 관련 부당이득 금지 조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5조(비영리 운영의 원칙) ① 입양과 관련하여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이법에 따른 <u>입양으로 인하여 부당한 재정적 이익 등을 취득하여서는 아니</u>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과 관련한 기관 또는 개인이 이 법에 따른 입양으로 인하여 부당한 재정적 이익 등을 취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u>누구든지</u>이 법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따른 입양 외에 <u>사인 간에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의뢰·알선 또는 조장·홍보하여서는 아니</u>된다.

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u>입양의 동의 및 승낙의 대가로 금전 등을 주</u> 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한 자 따라서 이러한 상위법 취지에 맞추어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관련 기관이나 개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감독해야 할 시장의 책무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지원사업 (안 제4조제6호 신설)

○ 안 제4조제6호에서는 시장이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을 할 수 있도록 구 체적인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시장은 건	제4조 <u>(지원사업)</u>
전한 입양문화의 조성과 입양아동	권익 및
의 <u>권익과</u>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사업을 <u>지원할</u> 수 있다.	<u>할</u>
<u><신 설></u>	6.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사
	회적 편견 및 차별 해소 정책의
	<u>수립·시행</u>

○ 통계청에 따르면 자녀 유무 상관없이 '입양을 하고 싶다'라고 답한 비율이 2020년(10.9%) 대비 2024년도(9.0%) 떨어졌으며, 이와관련해서는 입양자녀를 향한 사회적 편견 등 부정적 인식이 2020년(3.4%) 대비 2024년(4.0%)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짐.

<입양 관련 인식조사4)>

	입양에 대한 견해					
전도 자녀 유무에 자녀를 원하지만 상관없이 출산이 여건이 허락되면 어려운 경우는 입양을 하고싶다 고려해 보겠다			입양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잘 모르겠다		
	2020	10.9	19.9	37.3	32.0	
	2022	9.5	19.4	37.9	33.1	
	2024	9.0	21.7	40.3	29.1	

입양하고 싶지 않은 이유							
연도	입양의 필요성을 못느껴	경제적 부담	입양 자녀를 향한 사회적 편견	입양 자녀의 정확한 정보 수 어	친자녀 처럼 양육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	재산 상속 문제가 있어서	기타
2020	43.0	15.1	3.4	3.0	34.6	0.7	0.1
2022	41.0	12.3	4.0	3.2	38.6	0.6	0.4
2024	42.1	13.5	4.0	3.4	36.5	0.3	0.4

○ 입양아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 법 제6조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해소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 제6조(국가 등의 책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6조(국가 등의 책무) ④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u>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에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을 해소하는 등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⁴⁾ 통계청, 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19세 이상 인구), 입양에 대한 견해(19세 이상 인구)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해소 정책의 수 립 및 시행

- 이러한 상위법 입법취지에 비추어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가 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시장이 입양아동에 대한 사 회적 편견 및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짐.
- 다만 안 제4조에서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의 조성과 입양아동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 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상위법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 6조에서는 동일한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조례안이 상위법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해 보임.

<상위법과 개정안 비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6조(국가 등의 책무)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을 해소하는 등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u>다음</u> 각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개정안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시장은건전한 입양문화의 조성과 입양아동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운영
-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 5. 입양 후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의 상호 적응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
- 6.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해소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7.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8.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 5. 입양 후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의 상호 적응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
- 6.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해소 정책의 수립· 시행
- 7.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안 제5조 신설)

- 안 제5조는 시장이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양육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임.
- 구체적으로 안 제5조제1항 각 호에서는 ①양육수당, ②의료비, ③ 아동교육지원비를 규정하고, 안 제5조제2항에서는 ④입양축하금 을 규정하고 있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대상) <신 설>	제5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① 시장

<신 <u>설></u>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으로 한정한다.

은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가정에 다음 각호의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양육수당
- 2. 의료비
- 3. 아동교육지원비
- 4. 그 밖에 필요한 양육보조금
- ② 시장은 입양을 축하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가정 에 입양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 대상

 ----- 준

 민등록----

 보호대상아동---

 서 삭제>

- 법 시행령 14조제2항의 각 호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양육보조금 등의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양육보조금 등의 범위는 입양아동 양육가정에 정기적 지급하는 ①양육수당, ②입양아동 치료비 지원, ③그 밖에 필요 한 양육보조금으로 ④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거나, ⑤조례로 정하 는 비용임.

<양육보조금 등 범위에 관한 상위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32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①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범위 등)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양육보조금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양육수당**: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양육에 드는 비용
- 2. **의료비**: 다음 각 목의 비용 중 입양아동의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 가.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 다.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 3. 그 밖에 필요한 양육보조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
-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서울시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 등 지원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는 입양아동에게 총 4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3가지는 국고보조사업이며, 1가지는 시비 전액사업임.

<서울시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 등 지원현황>

연 번	세부사업명	지 원 내 용	재원분담
1	입양아동	○ 양육수당(월/인), 20만원(만18세 이하)	국비40%
1	양육수당	○ 양육수당(월/인), 20만원(만18세 이하)	시비60%

2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 양육보조금 (월/인) : 경증 월 634천원, 중증 월721천원 ○ 의료비 연 260만원 한도	국비40%
3	입양축하금	○ 입양축하금 지원 : 200만원(1회) - 입양확정일이 2022.01.01. 이후인 입양아동	시비60%
4	입양아동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국내입양된 만18세 이하고등학생 중 자사고, 특목고 재학생 ○ 지원내용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등 - 분기별 50만원(연 최대 200만원)	시비100%

 안 제5조제3항에서는 시비 전액으로 지원하고 있는 '입양아동 교육비지원비'사업 뿐만 아니라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양육수당', '의료비', '입양축하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지급대상 기준을 정하고 있음.

<개정안 제5조제3항>

제5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③ <u>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은 서울</u> 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 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한다.

- 국고보조사업의 지급대상은 시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교 부조건에 따라 결정됨.
- 보건복지부 '2025 입양실무매뉴얼'에서는 입양축하금을 포함한 국 고로 보조하는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을 관내 입양가정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5조도 매뉴얼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이 현재의 교부조건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향후 국고보조사업의 지원대상이 변경될 경우에는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 입법경제상 서울시 예산 전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타당해 보임.

<2025 입양실무매뉴얼 '양육보조금 등'>

3 입양축하금 지급

- 지급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지급방법
 - 매달 20일,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지급(지급일이 토 ·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지급절차
 - 입양부모가 아래의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 특별자치시장 · 시장 · 군
 수 · 구청장에게 신청한
 -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체13호 서식]
 - ※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가정법원 발급)
 - ※ 통장시본
 -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 특별자치시장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신청자의 계좌 로 지급함
 - 입양부모와 입양아동의 주민등록지가 상이할 경우, 아동이 거주하는 특별자치도 - 특별자치시 · 시 · 군 · 구에서 신청자(입양부모) 계좌로 지급함

※ 집행기관 의견(여성가족실 아동담당관, 붙임)

개정안과 관련해 집행부서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서울시
 지원 조례 내용을 현행화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

- 개정안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을 수정하고, 상위법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에 대한 사회적 차별 개선 등 지원내용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이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상위법에서는 동일한 지원사업에 대해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으로 정하고 있 어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수정이 요구됨.
- 또한 안 제5조에서 양육보조금 등으로 국고보조사업과 시비 전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국고보조사업의 경우교부조건이 변경되면 이에 따라 조례의 지원대상 규정(안 제5조제3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전액 시비 지원사업 중심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전문위원 김소은	02-2180-8144
입법조사관 김종훈	02-2180-8148

붙 임 조례안 관련 집행부서 의견

의안번호3001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안건 소관 상임위		규제철폐 안건
2 1 	이병도 의원 등 :	22명 <u></u>	보건복지위원회		해당없음
주요내용	반영하여, 현 있도록 변경 《주요 입법 요지 ○ 조례의 제명 조례'로 변경 ○ 입양아동과 ' 화 조성 의무 제3항) ○ 지원사업에 ' 책 수립·시행	행 조리 사고, ² 나고, ³ 나고, ⁴ 나고, ⁴ 나라, ⁴ 나ন, ⁴ ⁴ ⁴ ⁴ ⁴ ⁴ ⁴ ⁴	계의 제명을 입양 관 주요 용어·표현 등을 울특별시 입양아동 정에 대한 편견 및 장의 책무로 추가하여 장의 책무로 추가하여 동과 입양가정에 대 가하여 규정(안 제4년 축하금 등의 지급 및	면 가 및 차별규 한 작 한 조제(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해소, 건전한 입양문 정(안 제3조제2항 및 편견 및 차별 해소 정
부 서 검토의견	원안동의(O) /	수정요	요청() / 보류요청	()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입양정책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市 지원 조례를 내용을 현행화하려는 사안으로, 공적 입양체계에 맞춰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을 위 한 실질적인 근거가 마련되고 입양 인식개선 및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담당부서	아동담당관	팀장	박미영(☎ 2133-5174)	담당	박지선(☎2133-5176)